

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추가공모 요강

(반드시 공모요강을 숙지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하세요)

I 추진개요

□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추가공모
- 공모기간 : 2020. 3. 26(목) ~ 4. 8(수)
- 접수기간 : 2020. 3. 30(월) ~ 4. 8(수) 18:00까지
- 지원규모 : 370백만원 / 17건 정도
- 신청대상 : 문화예술교육 운영시설을 갖춘 공공문화기관, 문화예술시설, 공모조건을 갖춘 경남도민으로 구성된 단체
- 지원내용 :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

□ 추진목적

-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(공공문화기관, 문화예술시설 등)을 확보하여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·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 및 또래·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
- ※ 주요키워드 :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, 아동·청소년 및 가족(학부모), 문화예술 소양 함양, 또래·가족 간 소통, 건전 여가문화 조성

□ 추진방향

- 도내 전 시군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안배
- 전문예술단체·문화예술기관·문화예술시설 등이 신청 대상이나, 사회법인 등의 일반단체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예술단체와 협약·연계하여 공모 조건을 갖춘 후 수혜자에게 양질의 전문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허용 ※단, 협약서 내용에 공동책임을 명기 할 것

- 수혜자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직접 탐구·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자행정인력이 주체적 프로그램 운영

※ 일회성 체험형,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 지양

II 공모내용 ※반드시 숙지 후 지원신청

□ 프로그램(필수)

구분	세부 내용
내용	아동·청소년·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
교육 대상	경남도내 아동·청소년·가족(도서벽지/소외지역) 우선지원 (1개 사업수행단체, 수혜자 인원 최저10명~최고20명)
지원 규모	17개 단체 정도 (단체별 20백만원~23백만원 이내 차등지원) ※ <u>신규단체 최저지원</u>
지원 내용	교육 프로그램 운영비
신청 자격	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경남단체(최소 소속회원 5명이상 구성)로 고유번호증, 문화예술관련 법인등록증, 문화예술관련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한 예술단체, 공공문화기관, 문화예술시설 ※ 단, 사회법인 등 일반단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예술단체 및 문화기관과 협약하여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원신청 가능함 (<u>협약서 내 (공동 책임) 조항을 필히 명기</u>)
운영 기간	'20. 5월 ~ 11월 (사업기간 내 25회 ~ 30회차 이내 운영)

- 교육시간 ※1일 2시간 교육 준수

- 주말 운영 원칙,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30% 이내에서 주중, 공휴일 운영 가능

- 교육방식 : 교육목표에 따라 강의, 체험, 관람, 실연,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복합적으로 연계 구성하되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운영

- 기획행정(기획자, 코디네이터)

: 문화예술교육사(평생교육사), 문화예술교육기획자(수료증 소지자), 전문예술인(예술활동증명서, 예술관련학과 등 증빙)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행정 증빙(경험)이 되는 자

※ 사업 수행 중이라도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폭력 및 성범죄 이력이 발견 시 사업 중단 및 취소

※ 대표자 및 기획자(코디)는 강사(보조강사) 겸임 불가, 타 사업 포함

※ 기획행정 사업수행 중 교체 불가

- 교육강사 :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인(예술인증명, 관련학과, 관련자격증 등 증빙) 필수
 - 교육강사 : 주강사 ⇒ 가급적 수혜자 10명당 1명, 보조강사 2명 배정 권장
 - ※ 주강사 역할 ⇒ 교안작성 및 교육진행, 안전관리 / 보조강사 역할 ⇒ 주강사 교육보조 및 안전관리
 - ※ 주의사항 : 주강사 개인사정으로 당일 교육에 불참하였을 경우라도 보조강사가 수업진행을 하지 말 것
⇒ A강사 불참시 출석 B강사 합반 수업을 진행하되, 불참 강사의 수당지급은 하지 말 것
(단, 2회이상 불출석일 경우 계약해지 및 주강사 교체를 계약서에 명기 할 것)
- 교육장소 : 학교 밖, 경상도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
 - 생활문화센터, 문화회관, 문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공공도서관, 문화의집, 문화재 전수관, 문화원 등 ※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확보 및 수혜자의 접근성·생활안전 확보
 - 학원 등 영업장소·유사영업장소, 개인공방, 종교, 학교시설은 불가
 - 학원·종교·학교소속과 파생유사단체 및 수혜자는 지원 불가
 - ※ 장소 협약내용에 공모 탈락시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점을 필히 공지하고 적시 할 것
- 고려사항
 - 신규수혜자를 최종 공모 선정발표 후 공모에 의해 모집(필수)
 - '202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(5월)' 및 경남행사 참여 필수
 - 단체 간 교류, 캠핑, 자율연구모임, 예술교육성과공유발표회 등 프로그램 자율 편성
 - 전용 문화 공간 또는 상시 활용 가능한 교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 후라도 지원취소 처리(※시설사용 협약서 첨부 필수)
 - 지원신청시 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단체 자체 안전매뉴얼 제출 필수
- **아트캠핑 및 현장학습(프로그램 내 필수 편성) ※교육회차 포함**
 - 주요내용 : 타 교육현장 및 가족 간 소통·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캠프
 - 참여대상 : 당해 교육 수혜자 및 가족(보호자)
 - 운영기간 : 2020. 5 ~ 11월
 - 교육방식 : 문화예술 체험/감상/실연 유기적 구성
 - 현장인솔 : 기획행정, 강사(보조강사) 등 참여인력 전원
 - 장 소 : 도내 문화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등 이용

○ 고려사항

-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타 운영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
- 공연장상주, 레지던스 등 타 사업 운영단체와 연계 우대
- 수행단체 자체 안전매뉴얼에 따라 참가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철저
- 현장학습 당일 일정, 아트캠핑 숙박 포함 일정

□ 자율연구모임(프로그램 내 필수 편성)

- 주요내용 : 문화예술교육 관련 ※연구·조사·기획·토론을 위한 자발적 모임
- 연구주제 :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관한 자유주제
 - 경남지역만의 차별화된 자원·소재 및 현장에서 활용 접목한 주제
 -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 주제 제시(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 불인정)
- 운영방식 : 자율적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모임(월 1회 정기 모임)
- 고려사항
 - 2020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의 각 기획행정인력 4인 이상 구성
 - *자율연구모임은 경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과제이며,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
 - *최종 선정 단체 내 기획행정인력 모임 구성

□ 수업 전 연구모임(자율 편성, 필수아님)

- 주요내용 : 문화예술교육 관련 ※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단체 내 참여인력 자발적 교육연구모임
- 연구주제 :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진행 준비를 위한 자유주제
- 운영방식 : 단체 내 참여인력(기획행정인력, 강사, 보조강사) 오프라인 모임(월 2회, 하루 최대 2시간)
- 고려사항
 - 자체 교안연구(수업전연구모임)는 수행단체의 기획행정인력, 강사(보조강사)로 구성
 - 사례비만 지급 가능(회의식비, 다과비 등 집행 불가함)
 - *단체 자체 수업 전 연구는 차기(익일교육)교육에 대한 연구이며, 사례비 지출시 **교안이 필수** 제출되어야 함
 - *연구모임 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의식비, 다과비 등 집행 불가함(사례비에 포함)

□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발표회(축제, 예산 필수 편성) ※교육회차 포함

- 주요내용 : 문화예술교육운영단체 성과 공유 발표(공연, 전시, 체험 등)
- 일 시 : 2020. 10월 중 예정
- 운영방식 : 운영단체 기획행정인력 내 추진위원회 구성, 자체 기획·운영
- 고려사항 : 추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담금 논의 등 세부 운영 내용은 선정 후 재논의, 총 사업비 내 예산 5% 필수 책정

□ 공통사항

- 우대사항
 - 도서벽지/소외지역 대상 프로그램
 -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
 - 교육장소 및 운영주체가 공공 문화예술기관·시설, 전문예술단체일 경우
- 지원제외
 - 사업 수행 중 수혜자로부터 교육의 질 및 운용상의 중대한 민원 발생 단체
 -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, 공모요강에 충족되지 못한 단체

□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※사업신청서 예산편성기준표 참고

- 지원 규모 : 20백만원 ~ 23백만원
- 지원 내용
 -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비, 교육진행비, 기획운영비 등
 - ※간식비 지출 : 당일 교육수혜자 출석인원 확인 후 구입 및 개인별 동일 분량의 간식 지급
 - ※산출순서 : ①교육재료비 ⇒ ②참여인력 사례비 ⇒ ③ 회계수수료 ⇒ ④기타 비용 산출
 - 교육재료비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25%이내
 - 아트캠핑 및 현장학습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의 10%이내
 - 최종 성과공유발표회(축제)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5%이내
 - 자율연구모임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3%이내
 - 사례비 지원 기준 **※보조금 사업은 대표자 본인에게는 지급 할 수 없음**

구 분	지 원 내 용	비 고
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강 사 : 시간당 43,000원 ○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※ 가족인력 운용불가 	
기획 행정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자 : 프로그램 1회당 50,0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사업 회계, 사업기록, 사업 질 관리 등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 지원 가능 ※수업불가(필수) - 기획행정인력과 강사는 필히 분리하여 계약 할 것 ※ 기획자 운영 단체는 코디네이터 컨설팅 사례비 지급 불가 ○ 코디네이터 : 월 1,500천원 이내 책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디네이터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책임 담당 전제 하에 지원 가능 - 3개 내외 타 단체 컨설팅 의무(타 단체에서는 사례비 미지급) ※ 코디네이터 운영 단체는 별도의 기획자 운용 및 사례비 지급 불가 ※ 코디네이터 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문 주요내용 중 기획행정 자격 기본 - 문화예술교육 기획행정 경력 3년 이상 증빙(교육지원사업 경력 가능) ※ 가족인력 운용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일 강의시간 2시간 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현장학습 : 최대 5시간 인정 ※ 축제 캠프 : 최대 8시간 인정 ○ 수업 전 연구 사례비 책정 (월 2회, 1회 2시간 준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율연구모임과 다름 ※ 증빙서류 필수 첨부 ※ 강의시간과 겹치지 않게 주의 ※ 단체 내 기획자, 강사만 가능 ※ 코디네이터는 별도 사례비 지급 불가 ○ 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례비 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예산편성기준 및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광역교육 사업의 지역 참여인력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 ※ 사례비 매칭지방비로 편성(필수)

III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※반드시 숙지 후 지원신청

□ 교육대상

- 아동·청소년, 아동·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

<참고> 교육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

- 각 프로그램별 교육대상의 지역, 연령대,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
- 가급적 가족구성원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필수
- 가급적 시·도별 기초 **군·구 단위** 지역에서 수혜자의 생활안전 및 접근성 편의를 위해 **공공문화 시설**을 활용한 **지역교육 거점을 형성**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할 것
- 수혜자 모집 방법
 -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단체가 **공모선정 된 후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** 할 것
 - 지역 내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혜자 모집 독려를 권장 하지만, 수혜대상의 공정성과 폭넓은 향유 제공을 위해 수혜자가 **특정 소속 집단에 편향 되지 않게** 하여야함

○ 모집방법

- 선정 최종결과 발표이후 공개모집 진행
- 시·군청, 학교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한 수혜자 모집 독려
-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한가정 등 취약계층 우선 모집

※공모 선정되기 전 사전 모집 금지(공모 탈락시 단체에 책임이 있음)

□ 교육일정

○ 사업기간 : 2020년 5월 ~ 12월(12월 회계검사 및 정산)

- 프로그램 시작일 : 5월(5/1) ~ 11월(11/31)
- 학기별, 연간 프로그램 등 학교 학사 일정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
- 연간 25~30회차 내 운영(현장학습, 아트캠핑, 성과공유발표 등 포함)
- 가급적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수 기수 모집 운영 자제

※단, 수혜자가 4차시 이상 장기결석 또는 수업 포기시 수시모집 가능

○ 교육시간 : 주말 운영 원칙(평일 교육 가능), 교육시간은 주1회, **2시간** 설정

※오전 12:00 이전 수업종료, 오후 13:00 이후 중, 1개 선택 운영.(식사 시간 피할 것)

□ 교육장소

- 학교 밖, 지역 내 박물관·미술관·도서관·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

<참고사항> 교육장소 관련

- 경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 (학원성격의 장소,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불가)
※ 사유 : 수혜자(주민) 생활안전 및 접근 편의성 확보, 문화예술교육 지역 공공거점 확보 등
-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진흥원의 지속적 현장점검 및 관리를 할 것임
- 종교,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,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에서 운영 불가
- 단체 자체 보유 공간 활용 시 유사영업 및 기 수강생 수혜 우려성 관련 부적합
※ 사업수행 중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단체 있음을 인식 할 것.

□ 기타사항

- 기획행정인력은 교육프로그램 기획시 장소, 수혜대상, 주민정서, 교육 정도, 시행지역 일정 등 모든 기초조사를 필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산출 및 일정을 기획하여 **사업 수행 중 변경을 최소화** 할 수 있도록 기획 할 것
-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(5월 4주 예정) 중 기 프로그램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인, 가족 및 일반주민 등 대상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필수
-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발표회(10월 중 예정) 운영 예산편성 필수
- 프로그램 및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은 단체에 있으며,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아카이브로 활용함에 동의
-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주민들에게 홍보 되어야 함은 의무 사항임
- 진흥원 주최 **워크숍, 간담회 및 평가참석 필수**
- 대표자·참여인력이 폭력 및 성범죄 이력이 있는 단체는 사업신청 불가

※ 향후 발각시 사업 중단 및 취소

IV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□ 공모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0. 3. 30(월) ~ 4. 8(수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
- 접수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인터넷 접수
- 제출서류

제출서류 목록	제출방법
① 지원신청서 양식(hwp파일)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
②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	지원신청서 양식(hwp파일)에 이미지로 삽입
③ 교육장소·시설 사진 및 사용협조 증빙자료	
④ 신청단체의 최근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빙자료	
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

□ 지원 시 유의사항

- 기획서 작성의 오류 및 증빙자료의 불확실로 인한 1차 서류 탈락은 프로그램 작성자의 귀책사유임
- 유아, 꿈다락, 지역특성화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(중복신청 불가)
- 중앙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지원 선정된 사업 중 본 교육지원사업과 동일 프로그램 및 수혜자가 중복일 경우 지원중단 및 취소
- 프로그램 운영 중 수혜자에 의한 민원 발생시 사업 중단 및 반납
- 선정단체는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, 결과보고
- 사업종료 시 진흥원 교육사업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실시

V 심사계획 및 추진일정

□ 지원 방향

- 꿈다락 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 또는 단체 지원
- 지역 내 공공 문화기관·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
- 교육공간의 기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확정
-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 교육장소 심사위원 현장점검 예정
 - ※ 1차 서류심사 통과하지 못한 단체는 2차 발표 심사에 참석하지 않음
 - ※ 심의위원구성 : 중앙 및 외부 위원 40%내외 구성
 - ※ 최종 발표 및 질의 공개 심의(신청 단체 및 일반인 참관 가능)

□ 추진일정

○ 심사절차 및 진행방식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활용

서류 심사	⇒	인터뷰 심사	⇒	최종 선정결과 발표
NCAS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) 시스템 활용 심사 (2020. 4. 16 예정)		운영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(2020. 4. 23 예정)		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(2020. 4월 말 예정)

※ 상기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,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문의/안내

문화예술본부 문화예술교육센터 '꿈다락 토요문화학교' 사업 담당

유지용 과장 055-230-8743 / linze77@gcaf.or.kr

[참고] 예산편성 기준

목	세	세세목	내 용	비 고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기획 행정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자 :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,0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시간 초과 이후 1시간인정(20,000원) / 단, 교육장 정리 시 지급 인정 - 현장학습 : 최대 5시간/캠프, 축제 최대 8시간 인정(식사시간은 제외 할 것) - 수업 전 연구모임 시 강의로 책정 가능(2주에 한번, 1회 2시간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수업 전 연구모임 적용 시 증빙(회의록, 교안) 첨부, 강의시간과 겹치지 않게 주의 - 캠프 운영 시간당 20,000원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예시) 2박3일 기준, 1일 5시간 적용, 15시간×20,000원 = 300,000원 - 기획자 사례비는,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<u>기획자 운영 단체는 코디네이터 컨설팅 사례비 지급 불가</u> ○ 코디네이터 : 월 1,500천원 이내 책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디네이터는 소속단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책임 운영 외 <u>3개 내외 타 단체 컨설팅 전제 하에 지원 가능</u> ※ 코디네이터는 월 사례비 외 타 수당 지급 금지(출장여비는 지급) ※ 코디네이터 운영 단체는 별도의 기획자 운용 및 사례비 지급 불가 ※ 코디네이터의 경우 기획행정 경력 3년이상 증빙 필수 									
		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수업 2시간 외 1시간 인정(단, 교육장 정리시 인정) - 현장학습 : 최대 5시간/캠프, 축제 최대 8시간 인정(식사시간은 제외 할 것) - 주강사비(보조포함)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수업 전 연구모임 시 강의로 책정 가능(2주에 한번, 1회 2시간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수업 전 연구모임 시간 적용 시 증빙서류 첨부, 강의시간과 겹치지 않게 주의 - 운영기관 내부인력 강사비 탄력적 집행 가능(4대보험 가입자)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	소득세 신고 /납부 의무								
		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시 : 25 ~ 30회차 중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 <td>1등급[※]</td> <td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[※]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[※]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 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 [※]	250,000/시간	2등급 [※]	150,000/시간	3등급 [※]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
강사료	1등급 [※]	250,000/시간										
	2등급 [※]	150,000/시간										
	3등급 [※]	100,000/시간										
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참여자 교통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-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-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- 참여자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- 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※ 30km이상이라도 같은 시·군·구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※ 교통비(항공 및 철도 등) 실비 지급 ※ 거리 기준(교육장소 ⇄ 출장지)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도 증빙자료 제출 ☞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30-100km</th> <th colspan="2">101-200km</th> <th colspan="2">201-300km</th> <th colspan="2">301-400km</th> </tr> <tr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30-40</td><td>7,000</td><td>101-120</td><td>12,000</td><td>201-220</td><td>24,000</td><td>301-320</td><td>44,000</td></tr> <tr><td>41-60</td><td>8,000</td><td>121-140</td><td>14,000</td><td>221-240</td><td>28,000</td><td>321-340</td><td>48,000</td></tr> <tr><td>61-80</td><td>9,000</td><td>141-160</td><td>16,000</td><td>241-260</td><td>32,000</td><td>341-360</td><td>52,000</td></tr> <tr><td>81-100</td><td>10,000</td><td>161-180</td><td>18,000</td><td>261-280</td><td>36,000</td><td>361-380</td><td>56,000</td></tr> <tr><td>-</td><td>-</td><td>181-200</td><td>20,000</td><td>281-300</td><td>40,000</td><td>381-400</td><td>60,000</td></tr> <tr> <th colspan="2">401-500km</th> <th colspan="2">501-600km</th> <th colspan="2">601-700km</th> <th colspan="2">701km 이상</th> </tr> <tr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th>왕복거리</th> <th>금액</th> </tr> <tr><td>401-420</td><td>64,000</td><td>501-520</td><td>84,000</td><td>601-620</td><td>104,000</td><td>701-</td><td>124,000</td></tr> <tr><td>421-440</td><td>68,000</td><td>521-540</td><td>88,000</td><td>621-640</td><td>108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41-460</td><td>72,000</td><td>541-560</td><td>92,000</td><td>641-660</td><td>112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61-480</td><td>76,000</td><td>561-580</td><td>96,000</td><td>661-680</td><td>116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<td>481-500</td><td>80,000</td><td>581-600</td><td>100,000</td><td>681-700</td><td>120,000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		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		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			소득세 신고 /납부 의무
	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사 진행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행사료</td> <td>1등급*</td> <td rowspan="2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</p>	구 분	등급	지급금액	행사료	1등급*	150,000/시간	2등급*	3등급*	100,000/시간	사업소득 3.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사료	1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학술 행사비</td> <td>1등급*</td> <td>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td rowspan="3">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 : 실소요액</td> </tr> <tr> <td>2등급*</td> <td>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 </tr> <tr> <td>3등급*</td> <td>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</p>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 : 실소요액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8.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· 3시간 이내일 경우(*) 금액 적용 · 국외 : 실소요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사 및 자문료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심사료 및 자문료</td> <td>1등급</td> <td rowspan="2">200,000원</td> <td rowspan="3">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 : 실소요액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자문료 지급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 : 실소요액	2등급	3등급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: 150% · 5시간 이상: 200% · 국외 : 실소요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원고료	구 분	지급금액		소득세 신고 /납부 의무 사업소득 3.3% 기타소득 8.8%	
			원고료(외부인사)	○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			
			※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				
		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구 분	등급	지급금액		비 고
		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
				2등급	400,000원/곡		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
				3등급	300,000원/곡		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
		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	
		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·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	
		※ 1등급 :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				
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, 현장주차비 등 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					
안내 홍보물 제작비	○ 팸플릿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						
인쇄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조달청 기준 참고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※필수편성			부가세 납부 의무	
			기준금액		수수료		
			3천만원 미만		296,000원		
			3천만원 이상 ~ 4천만원 미만		352,000원		
			4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		383,000원		
			5천만원 이상 ~ 6천만원 미만		530,000원		
			6천만원 이상 ~ 7천만원 미만		574,000원		
공공 요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쿼서비스, 보험료 등					
임차비 (07)	차량/ 기자재	○ 차량 임차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○ 기자재 임차 : 비교견적에 의한 대여					

여비 (220)	국내 여비 (01)	여비 기준	○ 출장경비 지급 기준				소득세 신고 /납부 의무
			구 분	내 역	지급 방법	지급액	
			시내출장	여비	정액	· 4시간 미만 : 1만원 · 4시간 이상 : 2만원	
			시외출장	교통비	실비	· 대중교통비 지급 ·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	
				식비	정액	· 2만원 * 2식 이하 제공 시 1/2 삭감 * 3식 제공 시 미지급	사업소득 3.3%
				일비	정액	· 2만원	기타소득 8.8%
			○ 교통비 : 실비정액 기준 (대중교통비 기준)				
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회의 식비	○ 현장학습(아트캠핑) 및 결과발표,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진행시 회의식비 - 다 과 비 기준단가 : 5,000원 이내 / 1인 1회 기준 - 회의식비 기준단가 : 25,000원 이내 / 1인 1식 기준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※ 교육회차시마다 책정하는 것이 아닌 행사진행 시 책정 ※ 산출예시 (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등 행사 진행할 경우) - 다 과 비 : 5,000원×실 참석인원 확인 후 구입 할 것(개인별 포장 배분 할 것) - 회의식비 : 실 참석인원 확인(가급적 1인 15,000원 이내 적정) (e-나라카드 : 아침 : 08:00~09:00 / 점심 : 12:00~13:00 / 저녁 : 18:00~20:00)				부가세 납부 의무

202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지원신청 방법

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<http://www.ncas.or.kr>) 이용안내

- 지원신청, 심사, 심사결과통보 등 사업신청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해 진행합니다.
- 사이트 주소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 사업이 맞는지 필히 확인바랍니다.
- 전국 예술지원기관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,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 단체는 다시 회원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향후 심사결과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시 유의사항

- 지원신청시 대표자 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고, 접수마감일('20. 4. 8.(수) 18:00) 이후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접수 및 수정 불가합니다.
-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, <최종제출> 버튼을 눌러 최종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지원신청시 첨부파일에 있는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대표자, 실무자, 회원 /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 심사탈락, 보조금 반환 발생시 귀책사유가 되니 수정하기 바랍니다.

※선정 단체(개인)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기획재정부의

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사용하며, 교육은 최종선정 후 진행합니다.